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520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7. 14 선고 2021나1515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52022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양선화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나승이

변론 종결 2021. 6. 24.

판결 선고 2021.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B(C생)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채권 목록 가.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0.자 양도계약 및 별지1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채권 목록 나.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0.자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대한민국이 2020.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년 금제458호로 공탁한 46,922,5851)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 및 같은 법원 2020년 금제459호로 공탁한 108,661,81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제1항 기재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2) 원고는 2016. 9. 20. 주식회사 D(대표이사 B,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30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6. 9. 20.부터 2017. 9.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3) 원고는 2016. 9.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로 2016. 9. 20. E은행으로부터 3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7. 9.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8. 9. 18.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1) B는 2014. 7. 24.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F 소유의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32098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B는 2018. 4. 2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9045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2) B는 2014. 10. 30.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F 소유의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7089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B는 2018. 4. 2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8. 4. 27.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9046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 1) 소외 회사는 2018. 5. 17. 어음의 부도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에 의하여 E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은행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에게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2018. 9. 20. E은행에 대하여 B의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305,182,73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및 배당절차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0. 4. 8.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08,645,065원,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6,915,338원이 각 배당되었다.
- 2) 대한민국은 2020. 4. 27. 피고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배당금 108,661,819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년 금 제459호로,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배당금

46,922,585원을 같은 법원 2020년 금 제458호로 각 집행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한 채무자 B는 소외 회사의 어음부도로 인하여 원고가 E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대한민국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을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은 것인바, 이는 적법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2018. 4. 20. 무렵 원고의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체결되어 있었고, 위 채권양도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8. 5. 17. 소외 회사의 어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실제로 원고가 2018. 9. 20. E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B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2018. 4. 20. 당시 B의 적극재산은 ①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가.항 기재 채권 185,738,785원(원고의 주장대로 인정한다), ②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나.항 기재 채권 107,257,500원(원고의 주장대로 인정한다), ③ H 증권계좌 유가증권 및 예수금 합계 740,274,629원(유가증권 총액 740,273,390원 + 예수금 1,239원), ④ I은행에 대한 J예금(정기예금) 채권 150,000,000원, ⑤ K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000,000원, ⑥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30,000,000원으로, 합계 1,333,270,914원이고,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1,007,839,906원이다.

1	L카드	카드론 대출 채무	4,656,000
2	M카드	카드론 대출 채무	12,833,000
3	E은행	신용대출 채무	35,000,000
4	N카드	카드론 대출 채무	2,000,000
5	○은행	대출 채무	7,083,000
6	P카드	대출 채무	5,900,000
7	L카드	현금서비스 대출 채무	1,190,000
8	Q캐피탈	보증채무	27,899,000
9	H	단기성대출금액	233,170,000
10	H	장기성대출금액	372,926,906

1	L카드	카드론 대출 채무	4,656,000
11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305,182,000
합계	1,007,839,906		

원고는 ① R에 대한 보증채무 500,000,000원, ② E은행에 대한 채무 69,818,000원도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B는 2018. 3. 16. 소외 회사와 R 주식회사 사이의 S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보증기간 2018. 1. 4.부터 2019. 1. 3.까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R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으나, 2019. 1. 3.까지 소외 회사의 R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② E은행에 대한 채무 69,818,000원은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후인 2018. 12. 27.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채권 양도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채무는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 17호증, 을 제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T의 신용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채권 양도 당시 B의 적극재산은 1,333,270,914원, 소극재산은 1,007,839,906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325,431,008원 초과하는바, B가 185,738,785원 상당의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가.항 기재 채권 및 107,257,500원 상당의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나.항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각 채권 양도계약 당시 무자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

판사하진우

판사김두일

별지

1)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46,922,85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6,922,585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